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3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천준호·박성준·박상혁

추미애 • 이강일 • 한민수

박홍배 • 강선우 • 정을호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안전순찰원) ①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 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신 설> 제57조의2(안전순찰원) ① 「한국 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 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 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 친	현 행	개 정 안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		제57조의2(안전순찰원) ① 「한국 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 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 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 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 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 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 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 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 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